

1. 삭제 <2014. 2. 5.>
2. 물류관련협회
3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
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· 고시하는 기관

제46조(물류지원센터의 운영)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.

-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물류지원센터의 조직 · 인사 · 복무 · 보수 · 회계 · 물품 ·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,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6조의2(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)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(이하 "물류신기술등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1.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
2. 신규성 · 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
3.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제46조의3(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(이하 "우수 물류신기술 등"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

1. 물류신기술등의 명칭 · 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
 2. 물류신기술등의 내용(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 · 진보성 · 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)을 적은 서류
 3.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
 4.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
 5.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제46조의4(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, 협회, 학회,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